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표로 표시된 사업에는 왼쪽 난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목적
-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한다)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 요령, 점검 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 사.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 아.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 자.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차.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 카. 외부인과 외부 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타.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파.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 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시의 안전관리
- 거. 그 밖에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번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업의 종류				
		충전	집단	판매소	가스	저장

		공급	· 영업소	용품	
1	목적	○	○	○	○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	○
3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	○
4	자율적인 검사(검사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	○
5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 요령, 점검 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	○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	○	○	○
7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	○	○	○
8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	○	○	○
9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0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
11	외부인과 외부 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	○	○
12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	○	○
13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	○	○	○
14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시의 안전관리	○	○	○	○
15	그 밖의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	○	○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규정에는 왼쪽 난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난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마. 시설관리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과 진단에 관한 사항
바. 작업관리	1) 시공에 관한 사항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사. 협력업체관리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아. 수요자관리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자. 교육·훈련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차. 비상조치와 사고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카. 안전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정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